

은행 자산관리서비스 확대·활성화를 통한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방안

('23.5.10일, 은행연합회)

1 국내은행 수익구조 현황

- 국내은행은 총이익(이자이익+비이자이익) 대비 비이자이익 비중이 12.0%*(최근 5년 평균) 수준으로 이자이익에 편중된 수익구조를 보유
 - * ('18년) 12.1% → ('19년) 14.0% → ('20년) 15.1% → ('21년) 13.2% → ('22년) 5.7%
[출처 : 「2022년·2021년·2020년·2019년 국내은행 영업실적(잠정)」(금융감독원 보도자료)]
-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은 미국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(30.1%*, 최근 5년 평균)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
 - * ('18년) 28.7% → ('19년) 27.3% → ('20년) 31.7% → ('21년) 34.8% → ('22년) 27.9%
[출처 : 「한미 은행 간의 수익구조 및 수익성 비교 검토」(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보고서, '23.3월)]

2 원인 및 문제점

- (수수료 인상·신설 곤란) 국민의 금융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각종 서비스를 무료 또는 원가 이하로 제공*하고 있는 기준 방침 유지 필요
 - * 미국, 영국, 일본의 수수료율을 국내와 비교해보면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높거나 유사한 수준
[출처 : 「국내은행의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한 주요 국가별 은행 수수료체계 분석 및 시사점」(금융연구원 보고서, '16.8월)]
 - (판매수수료 중심 사업모델의 한계) 판매수수료 중심 사업모델이 사모펀드 부실판매를 유발하여 판매수수료 수입이 오히려 위축되는 결과 발생
 - 고객의 투자수익률 제고가 아닌 금융상품 판매량에만 몰두하도록 하는 판매수수료 중심 사업모델은 은행-고객 간 이해가 충돌하는 근본적 문제점 내포
- ⇒ 은행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인상·신설이나 판매수수료 중심 사업 모델 강화보다는 업무영역 확장(자산관리서비스 확대·활성화)을 통해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를 모색할 필요

3 자산관리서비스 확대·활성화 필요성

- 자산관리서비스는 금융회사와 고객 간 이해가 일치하는 사업모델로서 은행의 자산관리서비스가 확대·활성화되면 자산관리서비스 대중화 및 경쟁·혁신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을 통해 증가하는 자산관리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면서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가능
 - (원-원 사업모델) 자산관리서비스는 고객의 자산이 증가하면 은행의 이익도 늘어나는 사업모델이므로 고객·은행 모두가 원-원 (win-win) 가능
 - 은행은 자산관리서비스 확대·활성화를 통해 판매수수료(commission) 중심 사업모델을 관리·운용보수(fee) 중심 사업모델로 전환 가능
 - (우수한 은행 인프라) 은행은 광범위한 고객 기반과 지점망을 보유하고 있어 자산관리서비스 대중화에 가장 잘 기여할 수 있음
 - 증권사는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(랩어카운트)를 통해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점망이 충분치 않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
 - 은행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고액 자산가 외에 일반 국민도 자산관리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음
 - (경쟁·혁신 촉진) 은행 자산관리서비스 확대·활성화는 금융업권 및 금융회사 간 경쟁·혁신을 유발하여 자산관리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
 - 자산관리서비스(신탁·투자일임 등)는 특정 금융업권의 고유업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*, 소비자 편의 제고 차원에서 은행권의 진입장벽을 제거할 필요

* [출처 : 「은행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적 연구」(고동원 논문, '18.11월)]

- | |
|---|
| ※ ① [신탁업] 국내의 경우 당초 은행에만 신탁업 겸영을 허용하고 있었으나, 이후 증권사('05년), 보험사('07년)에도 신탁업 겸영을 허용 |
| ② [투자일임업] 증권사·자산운용사에는 투자일임업 겸영을 전면 허용하고 있으며, 보험사도 투자일임업 겸영에 따른 법령 상 제약이 없으나 ^{주)} , 은행 ('16년)의 경우 ISA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투자일임업 겸영을 허용 |
| 주)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('09년)으로 보험사가 겸영 가능한 업무에 투자일임업 추가 |

⇒ 은행의 자산관리서비스 확대·활성화를 위해 투자일임업 관련 제도 개선 등 필요

4 투자일임업 관련 제도 개선 건의사항

□ (제1안) 투자일임업 전면 허용

- 증권사의 경우 투자일임업이 전면 허용되고 있어 일임형 종합자산 관리계좌를 통해 원스톱 종합자산관리서비스 제공 가능
- 반면에 은행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에 한하여 투자일임업 경영이 허용*되고 있어 은행 고객이 투자일임을 통해 원스톱 종합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한계
 - 납입한도(연간 2천만원, 총 1억원)가 있는 ISA만으로 투자일임 서비스에 대한 고객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어려움
 - 일임형 ISA 총 투자금액(1.36조원) 중 은행 비중이 96%(증권사 4%)에 달한다는 사실('22년말 기준)을 보더라도 은행 투자일임 서비스에 대한 고객 수요는 매우 높음
- 은행에 대한 투자일임업 전면 허용은 투자 성향 및 투자 목표에 따른 사후관리·리밸런싱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은행 고객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제고 및 리스크 관리에 기여
 - 아울러, 은행 PB센터가 제공하는 세무·상속·부동산·주식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와의 결합 등 은행 종합자산관리서비스 고도화를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
- 우리나라와 같이 전업주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·캐나다도 은행의 투자일임업 영위를 허용하고 있음*

* [출처 : 「주요국 은행의 업무 범위 현황과 국내 법·제도적 시사점」(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, '15.12월)]

(제2안) 투자일임업 일부 추가 허용

○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일임업

- 공모펀드의 경우 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대표적인 금융투자상품*이며, 개인 펀드 투자자는 복수의 펀드에 분산투자하는 경향**이 있음을 감안하여 펀드랩*** 취급 허용

* '23.3월말 기준 은행권 공모펀드 판매잔고는 61조원

[출처 : 「판매기관별 펀드 규모」(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 Portal)]

** 개인 펀드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펀드 개수는 평균 2.7개이고, 자산관리 측면에서 펀드에 투자하는 경향이 다소 크게 나타남

[출처 : 「2022 펀드 투자자 조사 결과」(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보도자료, '23.2월)]

*** 금융회사가 공모펀드 중 우량한 펀드를 선정하여 적절히 분산투자해주는 상품

○ 로보어드바이저(전자적 투자조언장치)를 활용한 투자일임업

- 현재 은행은 마이데이터(본인신용정보관리업) 허가를 받더라도 은행법 시행령 상 제약으로 인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 겸영 불가*

*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신용정보법(§11⑥ i) 및 동법 시행령(§11⑤)에 따라 기본적으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 겸영 가능

- 마이데이터 사업자 가운데 은행을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바,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은행에게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 겸영 허용

불임**투자일임업 관련 제도 개선 시 기대효과(요약)****【투자일임업 관련 제도 개선】**

<제1안>

은행에 투자일임업 전면 허용

<제2안>

은행에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일임업
또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
투자일임업 추가 허용**【은행 자산관리서비스 확대·활성화】**

희망하는 모든 고객에게 투자 성향 및 투자 목표에 따른 포트폴리오
사후관리·리밸런싱 서비스 제공



고객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제고 및 리스크 관리에 기여

**【소비자의 자산관리 수요 충족 & 은행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】**

<소비자>

<은행>

금융업권·금융회사 간 경쟁·혁신을 통한 자산관리서비스 품질 향상	광범위한 영업망을 통해 양질의 자산관리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
---	---

비이자이익 비중 확대



인구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
소비자의 자산관리 수요 효과적 충족